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77호
------	-------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진호의원 외 2명
제출연월일	2022. 11. 14.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7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4.

대표발의자 : 장진호

공동발의자 : 민병춘, 홍태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청년키움몰” 이 자립준비 청년의 외식 창업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 제공 대상 확대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청년키움몰” 을 “먹거리몰” 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의 외식 창업을 제공하는 공간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의 개업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경 개정 (안 제2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률

- 「지방자치법」 제2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11. 14. ~ 11. 18.(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청년키움몰」이란 자립 준비 청년의 외식창업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를 “「먹거리몰」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개업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로 한다.

제3조제5호 “청년키움몰 : 지역경제과” 를 “먹거리몰 : 산림공원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논산시의회 의원	장진호 의원 외 2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청년키움몰”이란 자립 준비 청년의 외식 창업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먹거리몰”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개업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p>제3조(공원시설)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청년키움몰 : 지역경제과 	<p>제3조(공원시설)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먹거리몰 : 산림공원과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